

조교임용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조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조교A : 소속장의 지시에 따라 학생생활관리지도 및 교육,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2. 교육조교B : 소속장의 지시에 따라 학생지도 및 교육,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3. <삭제>
4. 교육조교C : 학과 및 수업 관련 업무보조, 실험실습보조 및 그밖의 업무를 담당한다.
5. 학사조교 : 소속장의 지시에 따라 학사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자격) ① 조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조교A, B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및 학생지도 능력이 탁월한 자
2. <삭제>
3. <삭제>
4. 교육조교C : 본교 대학원 석,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
5. 학사조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사행정업무능력이 있는 자

제4조 (직능) <삭제>

제5조(임용기간) ① 조교의 임용일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조교A : 2년 (1년마다 재임용을 받아야 한다.)
2. 교육조교B : 2년 (1년마다 재임용을 받아야 한다.)
3. <삭제>
4. <삭제>
5. 교육조교C : 본교 대학원에 정규 등록을 필하고 재학 중인 기간 단, 임용 기간 중 본교 대학원을 휴학, 자퇴, 제적으로 다니지 못할 경우,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6. 학사조교 : 2년(1년마다 재임용을 받아야 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가 재임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 퇴직된다.

③ 퇴직 후 동일인이 동일 직위(직위 명칭변경 포함)에 임용될 수는 없다. 다만, 최대 임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임용될 수 있다.

④ 조교의 임용계약기간은 1년(교육조교C의 경우 1학기)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복무) ① 교육조교A, B는 본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되, 업무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교육조교C : 소속장과의 협의를 통해 시간을 정하여 근무한다.

④ 학사조교 : 본교 복무규정 제2장의 규정에 준하여 근무하되, 업무 특성에 따라 야간에도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⑤ 조교는 임기 및 근무시간 중 타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본교 내 타 직종을 겸직하거나 그 일에 종사할 수 없다. 단, 교육조교C는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 하에 교내 타 직종을 겸직할 수 있다.

⑥ 휴무기간 중에도 총장이 지시할 경우 근무하여야 한다.

제7조 (휴가) ① 학사조교, 교육조교A, B에 한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세부사항은 본교 복무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8조 (승급) 학사조교 및 교육조교A, B의 승급은 근무연수와 근무성적에 따라 본교 교직원 자체 호봉표에 의하여 사정한다.

제9조 (임용서류) 조교로 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조교임용추천서 1부.
2. 이력서 1부.
3. <삭제>
4. <삭제>
5. 서약서 1부.
6.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1부.
7. <삭제>
8.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1부.

제10조 (정원 및 보수) 조교의 정원 및 보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면직) 조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교에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칙 및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무단으로 3주이상 결근하였을 때
3. 기타 조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및 총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94.제18차 교무위원회> 전면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95.제16차 교무위원회> 제4조 1호, 제6조①항 개정)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98. 제4차 교무위원회> 제2조①항·제3조·제4조·제5조·제6조 개정, 제7조 삽입으로 제7조 내지 제11조는 제8조 내지 제12조로 변경)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 3, 4, 5, 6, 7, 8, 9조 개정, <'99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③항 개정, <'00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①항, 제6조 ③,④항 개정,<'03 제2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임용기간) 및 제7조(휴가)는 2006년 9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자에게 적용하며, 이전에 임용된 자에게는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개정 <'06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신규임용 및 재임용되는 자에 적용한다.(제3조, 제4조, 제5조 ①항, 제6조 ③항, 제7조, 제8조 개정 <'07 제29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8년 8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조 1호, 2호 개정 <'08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경과조치로서 행정조교 2년 임기만료가 2010년 3월 31일까지인 자에게는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 3호, 제4조 3호, 제5조 4호삭제, 제6조 3항, 제7조 1, 2항, 제8조 개정 <'09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0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조 1항 2호 개정 <'09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1호제나목 개정 <2011 제2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 개정 <2013 제 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1호 가목, 나목 개정, 제5조 ①항 1호, 2호 개정, 제7조 ②항 삭제, 제7조 ③항 개정 <2013 제19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①항 개정, 제5조 ④항 신설 <2014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개정, 제4조 삭제,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개정 <2018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호 삭제, 제2조 제4호 내지 제5호 개정, 제3조 제1항 제2호 삭제, 제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개정, 제5조 제1항 제3호 삭제, 제5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 제5조 제4항, 제6조 제1항 개정, 제6조 제2항 삭제, 제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7조 제1항, 제8조 개정, 제9조 제8호 신설, 제10조 개정 <2020 제1차 교무위원회>)
- (2) (적용례)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임용 중인 연구조교는 임용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개정 <2020 제8차 교무위원회>)